살인미군의 무죄판결 무효화와 한국 법정에서 처벌 및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위한 결의(안)

(이 종 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2년 12월 11일
발 의 자 : 이종률의원외 14인

1. 제안이유

○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소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순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주한 미군은 사고의 진상을 왜곡 은폐·조작하고 두 살인 미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사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謝罪)하고,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 미군의 무죄판결을 무효화하고, 형사재판 관할권을 이양하여 한국의 법정에서 처벌하여야 함.

○ 주한 미군은 유족, 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함.

○ 불평등 조약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유린당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함.

※ 결의문 내용 : "별첨"

살인미군의 무죄판결 무효화와 한국 법정에서 처벌 및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위한 결의(안)

광복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주한 미군의 범죄를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주한 미군의 범죄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은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범죄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소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 효순, 심 미선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후 주한 미군은 사고의 진상을 왜곡·은폐·조작하고, 한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의 형사재판권 이양요구를 거부해 오다가 지난 11월 18일 기만적인 주한 미군 군사재판을 열었으며, 동월 20일과 22일에는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11월 26일에는 두 살인 미군을 본국으로 빼돌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 미군은 살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 미군을 한국의 법정에서 처벌하고 미군범죄의 재발방지와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불평등 조약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유린당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다음 사항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사망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謝罪)하라.
2. 주한 미군은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살인 미군의 무죄판결을 무효화하고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하라.
3. 주한 미군은 유족, 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4.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라.

2002년 12월 17일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